

日本 자판기 관계법령해설(6)

담배사업법 · 미성년자 흡연 금지법

담배사업법의 해설

담배사업법 제정의 경위

담배사업법은 담배 전매제도의 폐지에 의해 소화 59년 8월에 법률 제 68호로 제정되어 익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또 이 법률의 제정에 의해 담배 전매법(소화 24년 법률 제 111호) 및 제조 담배 정가법(소화 40년 법률 제 122호)은 폐지되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제 1조에 제정되어 있는 대로 「제조담배의 원재료로서의 국내산 담배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하여 제조담배의 제조 및 판매 사업 등에 관한 필요의 조정, 자국 담배 산업의 건전 발전을 통한 재정 수입의 안정적 확보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있다.

동 법은 제 1조 이하 제 52조로 구성되어 자판기에 의한 영업에 관련되는 조문은 제 22조 [제조 담배의 소매판매업의 허가], 제 23조 [허가의 기준], 제 25조 [영업소의], 제 26조 [출장판매] 등이다. 또 동법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소화 60년 3월에 정령으로서 「담배사업법시행령」, 대장성령으로서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이 각각 제정되어 있다.

또 자판기에 관련한 통달로서는 「담배자판기의 취급에 관해서」(평성원년 6월 30일 대장성이재국담배사업심의관통달장리 제 2598호), 「담배자판기의 취급에 관해서」(평성원년 7월 14일 대장성이재국담배사업심의관통달장리 제 2800호) 등이 나와 있다.

자판기에 관련한 정령 · 성령 · 통달 등

「담배자동판매기의 취급에 관해서」(평성11년 4월 · 대장성리재국담배사업심의관통달법) 「제조담배소매판매업허가 등 취급요령」(평성11년 4월 개정)

자판기에 의한 담배 판매에 필요한 조건

●대장대신의 허가가 필요

담배의 소매판매는 담배사업법 제 22조에 의해 대장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자판기에 의해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지 담배의 소매판매업 허가를 받은 업자가 그 점포에 자판기를 신설할 때는 새로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담배 소매판매업의 면허조건

담배 소매판매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 제 22조 및 규칙 제 18조에 의해 소정양식의 허가신청서를 일본 담배산업주식회사의 영업소를 경유해서 판매를 정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장성재무국장(당해 소재지가 복강재무지국의 관할지역내의 장소에는 복강재무지국장)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신청서에 기재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청서의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미성년자(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자판기 설치 허가의 조건

●자판기의 점포병설 원칙

담배자판기의 설치장소에 관해서는 평성 원년 6월의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의 개정예에 의해 점포에 병설되지 않는 경우 등 미성년자 흡연방지의 관점에서 충분히 관리, 감독이 어려운 장소는 부적당한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것에 기준해 대장성은 동 월, 각 재무국장 및 복령재무지국장에 통달 「담배자동판매기의 취급에 관해서」에 의해 소매점매업의 허가할 때는 전 「자판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점포로 병설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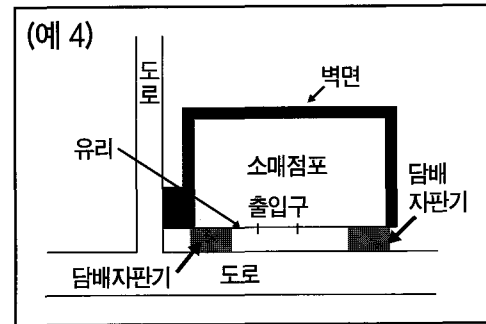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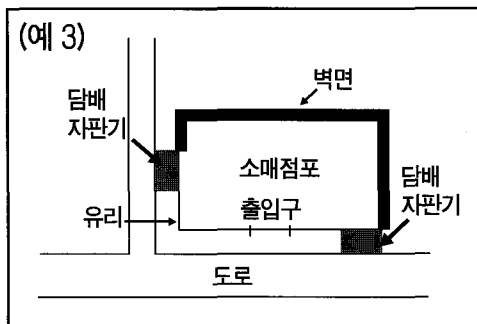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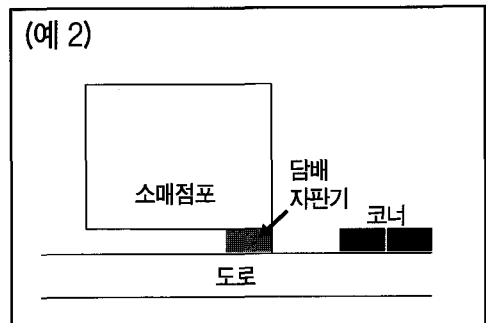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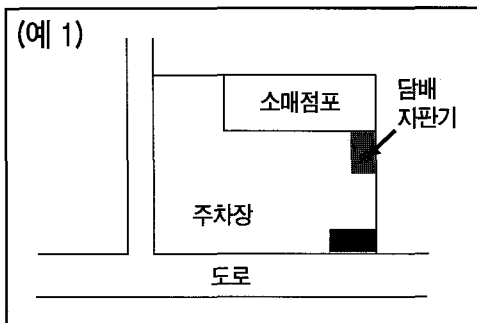
단지, 「신청자가 영업을 행하고 있는 소매점포에 자판기를 병설할 때, 신청자 이외의 제 3자가 영업을 행하고 있는 소매점포에 자판기를 병설 시, 당해 제 3자가 관리 책

임을 물어 위약서를 제출할 때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허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미성년자 방지의 관점에서 충분히 관리·감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질 때는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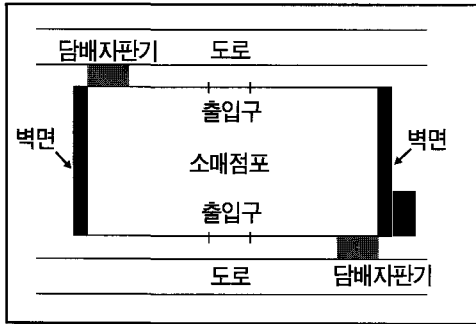
또 동년 7월, 전국담배판매협동조합연합회에 통달 「담배자동판매기의 취급에 관해서」에 의해 기존 설치된 자판기중 관리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설치장소의 갱신을 하는 등 개선을 지도한다.

단지, 대장성은 평성 11년 4월의 통달 「담배자동판매기의 취급에 관해서」에 의해 「점포에 병설한다」의 의미를 「자판기가 점포 내에 설치되어 있는 형태 또는 점포 외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점포내의 종업원이 있는 장소부터 자판기 및 자판기의 이용자를 직접 쉽게 시인할 수 있는 장소에 점포와 접해서 설치되어 있는 형태」로 정의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에 예시 하는대로 한다.

점포병설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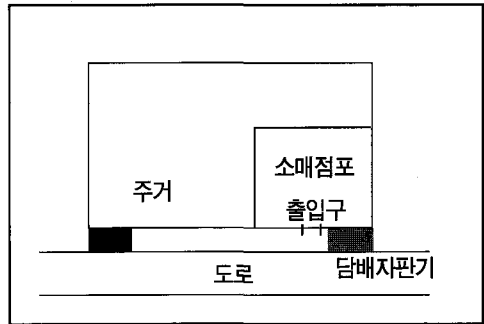


(예 5)



■ 은 병설로 된다.

(예 6)



■ 은 병설하지 않으면 안된다.

※ 어느곳의 경우도 자동판매기 및 담배구입자가 종업원이 있는 매장 또는 계산대로부터 직접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자판기의 증설 · 출장판매

● 출장장소에 대해 면허를 얻어야 한다

담배판매점이 자판기에 의해 담배의 출장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제 26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출장 판매할 장소에 대해 대장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의 허가 신청은 시행 규칙에 정해진 소정의 출장면허신청서를 일본담배산업(주)의 영업소를 경유해 관할재무국장 (북강재무지국관할의 지역에서는 동지국장)에 제출해야 한다. 또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서 이하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1. 출장판매하려고 하는 장소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장소에 담배를 판매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2. 출장판매 하려고 하는 장소가 대규모의 소매점포 내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매점포의 매장면적 및 시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 증설설치는 불필요, 관리 · 감독의 가능한 장소

자판기는 담배 매장에 병설 또 증설하는 경우 소매판매업자의 허가가 있으면 압출, 면허등이 필요하지 않다. 단지 미성년자 흡연방지의 관점에서 충분한 관리, 감독을 가하기 어려운 장소에의 병설, 설치하는 할 수 없다.

자판기의 심야 판매 대책

● 오후 11시~익일 아침 5시까지 판매를 정지

미성년자의 흡연방지의 관점에서 전국 담배판매협동조합연합회는 평성 8년 4월부터 옥외설치의 자판기에 관해 오후 11시부터 익일 아침 5시까지 판매를 정지하는 자주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설치대수가 많은 동경 23군 및 12정령 지정도시에서는 1년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평성 9년 4월 1일에 실시된다.)

이것은 평성 7년 2월의 규제완화검토위원회 답신 및 동년 3월의 후생성의 담배이동 허가면허회 보고에 의한 담배자판기규제강화의 제언을 앞선 것이다. 기 설치의 자판기에 관해서는 타이머 설정을 해야하고 신설기에 관해서는 타이머를 내장하도록 되어 있다.

표시에 관한 규정

● 미성년자 흡연금지에 관한 표시

담배자판기에는 자판기 통일 스티커 이외에도 담배자판기만의 표시 사항이 있다.

첫째는 미성년자 흡연금지에 관한 표시이다. 평성원년 7월 대장성이 전국 담배판매협동조합연합회에 통달 「담

배자동판매기의 취급에 관해서」에 의해 담배자판기에는 미성년자흡연방지에 관한 표시를 행하게 지도하고 있다. 동 연합회에서는 이 통달에 기해 스티커를 제작, 전 판매점에 배열하고 있다.

표시사항의 서체, 표시위치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단지 평성원년 7월의 대장성에 의한 행정지도에서는 미성년자 표시금지에 관한 표시를 할 때에는 충분히 주의가 환기되게 표시 크기 등에 배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판매정지 스티커 부착

전국 담배 판매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자판기의 심아이동대책에 관련해 「오후 11시부터 익일 아침 5시까지 판매를 정지하고 있다」의 스티커를 여하 회원에 배포, 자판기에 부착하게 지도하고 있다.

규칙제정

● 무허가로 담배를 판매할 경우

담배사업법 제 49조에 소매판매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판기에 의해 무허가 판매를 한 경우에도 같다.

● 정가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

담배사업법 제 36조에서 소매판매업자는 대장대신이 허가한 소매가격이하로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담배의 할인판매는 할 수 없다. 이 규정에 위반해 담배 판매를 행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법률조문

담배사업법 (소화 59년 8월 10일 제정)

(목적)

제 1조 이 법률은 담배전매제도의 폐지에 의해 제조담배에 대한 조세가 재정수입에 있어 차지하는 지위 등에

관련 제조 담배의 원료용으로서의 국내산 담배의 생산 및 수입에 관련해 제조담배의 제조 및 판매 사업 등에 관한 필요의 조정, 자국 담배산업의 건전 발전을 통한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및 국민전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담배의 소매판매업의 허가)

제 22조 제조담배의 소매 판매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말한다. 이하 같음)를 업으로 하려고 하는 자는 당분간 그 제조 담배에 관한 영업소 (이하 제 37조 까지 및 제 49조에 있어서 「영업소」라고 말한다) 것으로 대장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회사 또는 특정 판매업자가 소매판매업으로 행하려고 할 때도 같은 것으로 한다.

2. 전 항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대장성으로 정해진 것에 의해 다음에 원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대장대신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1)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2)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미성년자 (영업에 관한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제한한다.)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영업소의 소재지

3. 전 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위약하는 서면 기타 대장성령으로 정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허가의 기준)

제 23조 대장대신은 전조 제 1항의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1) 신청자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벌금이하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끝낸, 또는 집행을 받는 것이 없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경과하지 않을 때.

- (2) 신청자가 제 3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전조 1항의 허가를 취소하고 그 취소일부부터 기산하여 2년을 경과하지 않을 때.
- (3) 영업소의 위치가 제조 담배의 소매업을 업으로 행하는 것에 적당한 경우로서 대장성령으로 정해진 경우일 때
- (4) 제조담배의 취급 여정고가 대장성령으로 정해진 표준에 도달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질 때
- (5) 신청자가 파산자로 복권을 획득하지 않은 경우 그 기타 소매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에 부적당한 경우로서 대장성령으로 정해진 경우일 때
- (6)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중 제 1호 또는 제 2호에 규정한 자 또는 파산자로 복권을 얻지 않은 것으로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7) 신청자가 미성년자 (영업에 관해 성년과 동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한다) 또는 금치산자이거나 그 규정대리인의 제 1호 혹은 제 2호에 규정하는 또는 파산자로 복권을 하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 자일 때

(출장판매)

제 26조 소매판매업자는 그 영업소이외의 장소에 출장하여 제조담배의 소매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장성령으로 정해진 곳에 의해 그 장소에서 대장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2. 제 24조의 규정은 전항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유추하여 적용한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소화 60년 3월 5일 제정)

(영업소의 위치가 부적당한 경우)

제 20조 법 제 23조 제 3항에 규정하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조 담배의 소매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당한 경우로 대장성령으로 정해진 경우는 다음에 원하는 경우로 한다.

1. 예정 영업소의 위치가 소로에 접해있는 장소 기타 이것에 준하는 장소에 있어 제조담배의 구입에 두드러지게 불편하다고 인정되어진 경우
2. 예정 영업소와 가장 가까운 소매판매업자와의 거리가 대장대신의 정해진 경우를 제외, 예정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해 25m부터 300m까지의 범위 내로 대장대신이 정해진 거리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3. 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가 점포에 병설되어 있지 않는 장소 등 제조 담배의 판매에 대해 미성년자 흡연방지의 관점에서 충분히 관리, 감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진 장소에 있는 경우

담배자동판매기의 취급에 관해서 (평성원년 6월 30일 개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 20조의 일부 개정에 따라 평성원년 7월 1일 이하에 수리된 제조 담배소매판매업 면허신청, 영업소 이전의 허가신청 및 출장판매의 허가신청에 관해서는 소화 60년 4월 1일 부장리 제 1241호 이체국담배령사업심의관 통달「제조담배소매업면허등 취급요령」(이하「취급요령」이라 말한다) 외 아래의 내용에 의해 취급한다.

1. 담배자동판매기의 기기를 예정영업소로 하는 제조담배 소매판매업 (특정 소매판매업을 제한다. 이하 같음) 의 허가 신청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해 허가할 것. 단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가 있어도 미성년자흡연방지의 관점에서 충분한 관리·감독이 어렵다고 인정되어지는 경우는 허가를 하지 않을 것.

- (1) 신청에 관한 자동판매기가 신청자가 영업을 행하고 있는 소매점포에 병설되어 있을때
 - (2) 신청에 관한 자동판매기가 신청자 이외의 제 3자가 영업을 행하고 있는 소매점포에 병설되고 게다가 당해 제 3자가 별첨의 위약서를 제출할 때
2. 제조담배소매업의 허가에 해당할 때는 전부 다음의

조건을 부가할 것.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포에 병설할 것」

3. 소매판매업자가 상기 2의 조건에 반해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경우 (해당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관한 점포가 완성 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담배 사업법 제 31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기초해 당해 소매판매업자에 관해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것.

4. 1, 2 및 3은 영업소 이전의 허가신청 및 출장 판매의 허가신청 (취급요령 제 3의 2의(1)에 해당하는 것을 제한다) 에 관해 유추하여 적용한다.

제조 담배 소매판매업 면허 등 취급요령 (명년 11년 4월1일 개정)

제 2장 소매판매업의 허가

제 1 소매판매업의 허가 (법률22조 내지 제24조 관저)

1. 허가의 기준

소매판매업의 허가의 신청이 다음의 기준에 해당할 때는 허가하지 않는다.

(2) 법률 23조 제 3항, 규칙 제 20조 관저

③ 자동판매의 설치장소가 부적당한 경우

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가 점포에 병설되어 있지 않은 장소 등 제조 담배의 판매에 관해 미성년자 흡연방지의 관점에서 충분한 관리, 감독이 어렵다고 인정되어지는 장소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점포에 병설」이란 자동판매기가 점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 또는 점포 외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 점포 외의 종업원이 있는 장소에서 자동판매기 및 자동판매기의 이용자를 직접 또는 용이하게 시인할 수 있는 장소에 점포와 설치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미성년자흡연방지법의 해설

미성년자흡연방지법제정의 경위

미성년자흡연방지법은 명치 33년 3월에 법률 제 33호로 제정되어 동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제 1조 이하 4

조로 구성되어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의 금지

●미성년자의 흡연금지

미성년자 흡연방지법의 제 1조에 의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흡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의 금지

동 법 제 4조에 의해 영업과 미성년자의 흡연의 목적에 의해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벌칙규정

영업자가 미성년자의 흡연의 목적에 의해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의 벌금은 1만엔 미만으로 되어 있다.

법률조문

미성년자흡연방지법 (명치 33년 3월 7일 제정)

(미성년자의 흡연 금지)

제 1조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는 담배를 흡연할 수 없다.

(담배 및 기구의 몰수)

제 2조 전 조 2를 위반한 자가 있을 때는 행정의 처분으로서 흡연을 위해 소지하는 담배 및 기구를 몰수한다.

(친권자의 처벌)

제 3조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을 행하는 자를 알고 흡연을 제지하지 못한 때는 1만엔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친권을 행하는 자에 대해 미성년자를 감독하지 않는 경우 전항의 의해 처단한다.

(판매자의 처벌)

제 4조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에게 흡연 또는 기구를 판매하는 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